

금강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 운영규정(폐지)

제 정 : 2016. 2. 1.
개 정 : 2017. 6. 20.
개 정 : 2018. 5. 21.
폐 지 : 2020. 12. 2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 기초교양교육원(이하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교양교육 정책개발 및 계획 수립
2. 교양 교육과정의 평가
3. 기초교양교육위원회 운영
4.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강의 분석보고서
5. 기타 교양교육 일반에 관한 사항

제3조(원장) ① 교육원에 원장 두며,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원장은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, 교육원을 대표한다.

제4조(조직) ① 교육원은 기초교육지원 담당직원이 교육원 업무를 담당한다.

② 교육원은 교양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교내 교수 및 외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정한다.

제5조(위원회) ① 교육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초교양교육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기초교양교육원장이 되며 간사는 주무부서 팀장이 된다.

④ 위원회는 교양교과과정의 편성, 개편과 운영에 관한 사항, 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강의 분석보고서 작성 및 기타 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등 원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한다.

⑤ 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, 소위원회 구성과 역할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6조(교양교육과정 운영 및 강의 분석보고서) ① 학년도가 종료되면 교양교육종합보고서를 작성한다.

② 보고서에는 당해학년도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수요조사, 운영결과, 개선내용 등 환

류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.

③ 작성된 보고서는 교학지원처에 제출한다.

④ 교학지원처는 제출된 보고서를 교육과정품질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고, 결과를 글로벌교양학부에 전달하여 개선하도록 한다.

제7조(협의) 교양 교과과정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기초교양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제8조(기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초교양교육원장이 제의하여 총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로터스칼리지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2020년 12월 22일부터 폐지한다.